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4. 23 선고 2023가단539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강진균

소송대리인 변호사 길탁균

변 론 종 결 2024. 3. 19.

판 결 선 고 2024. 4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7,93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7. 28.부터 2024. 4. 23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2. 4. 20. 전남 강진군 C 대 674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는 2019. 6. 1.부터 2023. 7. 4. 이 사건 토지 인근 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도 사업부지에 속한다고 오인하여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점유·사용하였다. 다.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9. 6. 1.부터 2023. 7. 4.까지의 임료 감정 축탁 결과는 27,935,000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D에 대한 임료 감정 축탁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피고는 2019. 6. 1.부터 2023. 7. 4.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으로 점유·사용하여 임료 상당액의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7,93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3. 7. 28.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. 4. 23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선민정